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79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김재형 의원 (1명)
찬 성 자 : 강대호, 정재웅, 오현정, 김제리, 한기영, 신정호, 김종무, 고병국, 최 선, 오한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불법 현수막을 예방하고, 홍보수단이 취약한 지역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전자게시대의 설치 대상 지역에 다중 통행 장소인 지하철역 광장을 추가하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사유지뿐 아니라 국·공유지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전자게시대의 설치 대상지역에 지하철역 광장 추가
(안 제9조제3항제1호가목)

○ 전자게시대 설치 대상지역 중 전통시장 주변 100미터 이하의 지역에서 (단, 주거지역·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를 삭제
→ 국·공유지까지 확대(안 제9조제3항제1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철도역”을 “철도역·지하철역”으로 하며, 나목 중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을 “이하의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 다. (생 략)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 ---------- ---------- 1. ---------- ---------- ---------- 가. 철도역·지하철역· ---------- ---------- 나. ---------- ---------- ---------- 이하의 지역 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설치 가능 지역의 일부를 확대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시장 등의 공공 목적의 광고나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 광고 허용 범위에 지하철역 광장을 추가하고 전통시장 주변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유지에 허용하던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 구역을 국·공유지 등 모든 지역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현재 서울시가 설치 운영 중인 사례가 없고 구체적인 추가 설치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